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대리 자격 법정대리인 등으로 한정>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56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7. 8.
3. 회 부 일 : 2024.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 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 시 문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을 대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출원)</u>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현행	개정안
<신설>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의2(권한 없는 자의 신고·출원)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병무청은 입영 날짜를 선택하여 입대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복학·취업 등 개인 일정에 맞춰 특정 시기에 입대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¹⁾.

이러한 입영 신청 대행 행위는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여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²⁾을

1) 출처 : 한겨레신문(2023.7.13.) 병무청 ‘선착순 입영신청 대행업체’ 고발 방침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 관련 신청을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행정사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에 일부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반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은 일부 업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에 있음.

2) 「병역법 시행령」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위반하는 행위임.

- 개정안은 법률상 무자격자인 대행업체를 통한 입영 신청 대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권한 없는 자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병역 관련 신고·출원절차 비교 >

구분	「병역법 시행령」 제3조	개정안 제5조의2
대리 신청 가능 사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신고·출원 수단	문서(전자문서 포함), 구술,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	문서, 구술,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
대리 신청자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무자격자의 신고·출원 시 처벌 규정	없 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개정안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대리 신고·출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의 유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리 신고·출원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은 신고·출원은 기본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³⁾을 감안하여 신고·출원 문서에 전자문서⁴⁾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 없는 자의 신고·출원을 금지한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나,

국방부 및 병무청은 벌칙 부과는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 권한 없는 신고·출원 대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입법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처벌 조항 신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개정안이 벌칙 조항 신설로 이루고자 하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 확립 등 공익적인 필요성과 개인이 부담하는 처벌 수준을

3) 「병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문서에 전자문서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처벌 필요성, 처벌 수위 등에 대하여 입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출원의 경우를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외에 전화, 팩스 등을 신고·출원의 수단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